

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



병무청

대구경북지방병무청



수신 병역지정업체장

(경유)

제목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국외여행허가 안내자료 보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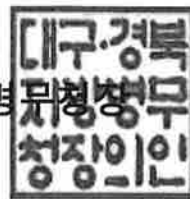
1. 관련근거

- 가. 병역법 제70조(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)
- 나.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(국외여행허가 등), 제146조(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및 기간)
- 다.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4조(허가의 대상), 제5조(목적별 허가의 범위)
- 라.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47조(국외여행허가의 범위 등)
- 마. 자원관리과-1997('21.6.23.) "여권법 개정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민원안내 철저(재강조)"
- 바. 고객지원과-10216('21.11.11.)"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허가 안내자료 배포 협조"

- 2.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에 따라 국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서 작성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국외여행허가 안내자료를 보내드리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사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국외여행허가 안내자료 각 1부. 끝.

대구경북지방병무청



주무관

이유정

산업지원계장

배재호

과장

전결 2021. 11. 16.

김형삼

협조자

시행 사회복무과-15074

(2021. 11. 16.)

접수

우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3, (신서동, 대구경북병무청청사) / <http://www.mma.go.kr>

전화번호 053-607-6285

팩스번호 053-607-6250

/ luj220@korea.kr

/ 비공개(8)

공정하고 정의로운,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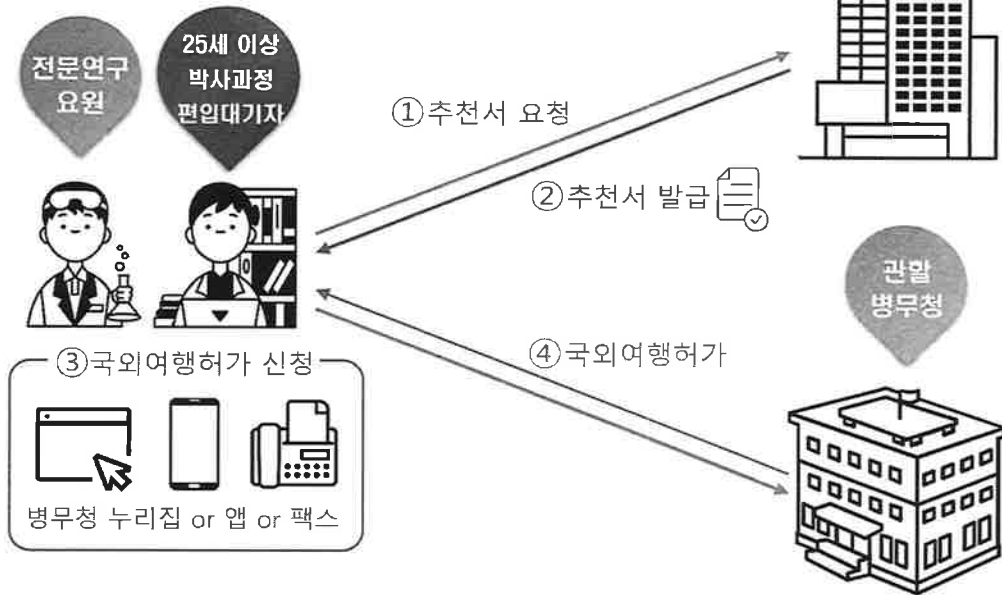


전문연구요원의 국외여행허가 안내



전문연구요원 및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의 국외여행허가 절차

- ⚠ 국외여행 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한 경우
-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연령에 관계없이 국외여행허가 필요
 -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로서 25세 이상인 사람
(여행일정상 귀국년도-출생년도≥25이면 국외여행허가 필요)



신청방법

- 필요서류 : 병역의무자 국외여행(기간연장)허가 신청서,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(단, 국외출장·공동연구·기술연수·기술지도 목적일 경우 관련서류 추가제출)
- 온라인 신청(누리집, 앱)의 경우 본인인증 후 신청서는 생략, 나머지 서류 첨부
- 서식은 병무청 누리집 민원서식 메뉴에서 '국외여행'으로 키워드 검색(본인인증이나 로그인 없이도 내려받을 수 있음)
- 전문연구요원은 소속연구소장의 추천서를,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및 편입대기자는 소속학교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 (단, 전직대기 등 소속이 없는 기간에는 추천서 생략하고 국외여행허가 신청)
- 신청서는 허가대상자 본인이, 추천서는 소속연구소 또는 대학원 담당자가 작성

주의사항

- ✓ 국외여행허가 추천기간은 소속기관에서 승인받은 출장기간 또는 휴가기간이 아니라 주말, 공휴일, 휴무일을 포함하여 실제 출국심사일~귀국일까지로 하여야 함
▶ 휴가를 포함하지 않고 주말, 공휴일, 휴무일만을 이용하여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추천서를 받아야 국외여행허가 가능
- ✓ 예약한 항공편의 출발시각이 새벽이어서 출국심사가 전날 야간에 이뤄질 경우 항공편 출발일자 하루 전~귀국일까지로 추천
- ✓ 국외출장·공동연구·기술연수·기술지도 목적 국외여행허가는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이내로 가능(박사과정 편입대기자는 편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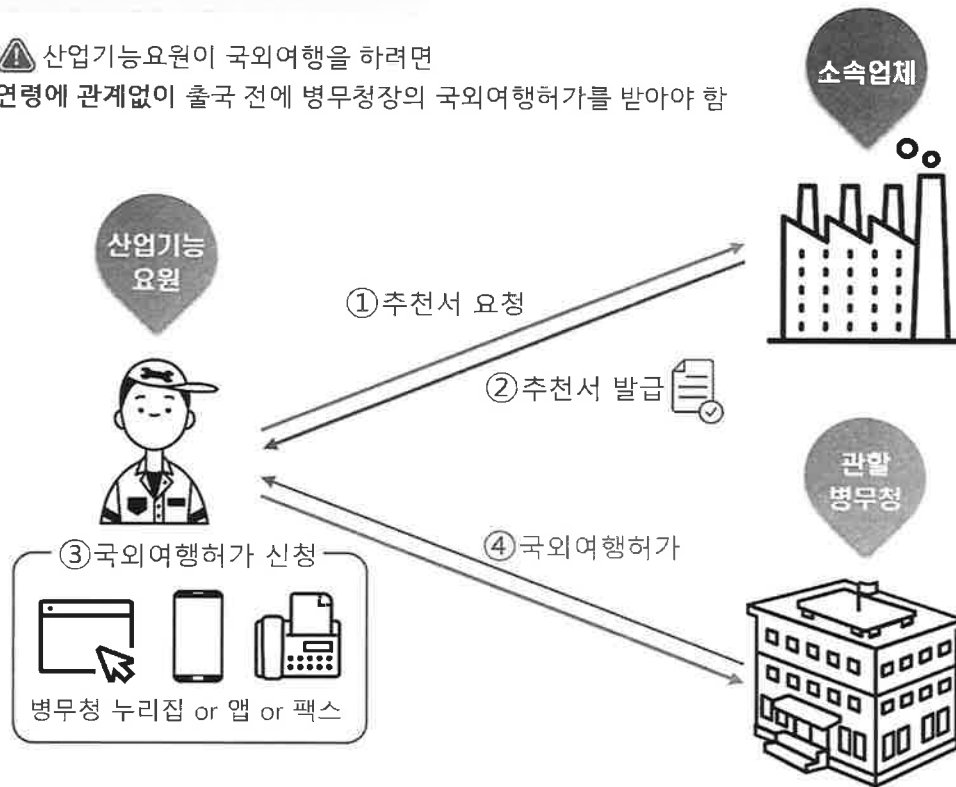


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허가 안내



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허가 절차

⚠ 산업기능요원이 국외여행을 하려면
연령에 관계없이 출국 전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



신청방법

- 필요서류 : 병역의무자 국외여행(기간연장)허가 신청서,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(단, 국외출장·공동연구·기술연수·기술지도 목적일 경우 관련서류 추가제출)
- 온라인 신청(누리집, 앱)의 경우 본인인증 후 신청서는 생략, 나머지 서류 첨부
- 서식은 병무청 누리집 민원서식 메뉴에서 '국외여행'으로 키워드 검색(본인인증이나 로그인 없이도 내려받을 수 있음)
- 복무 중인 산업기능요원은 소속된 병역지정업체장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함 (단, 전직대기 등 소속이 없는 기간에는 추천서 생략하고 국외여행허가 신청)
- 신청서는 허가대상자 본인이, 추천서는 병역지정업체 담당자가 작성

주의사항

- ✓ 국외여행허가 추천기간은 소속업체에서 승인받은 출장기간 또는 휴가기간이 아니라 주말, 공휴일, 휴무일을 포함하여 실제 출국심사일~귀국일까지로 하여야 함
 - ▶ 휴가를 포함하지 않고 주말, 공휴일, 휴무일만을 이용하여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추천서를 받아야 국외여행허가 가능
- ✓ 예약한 항공편의 출발시각이 새벽이어서 출국심사가 전날 야간에 이뤄질 경우 항공편 출발일자 하루 전~귀국일까지로 추천
- ✓ 국외출장·공동연구·기술연수·기술지도 목적 국외여행허가는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이내로 가능



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국외파견/출장

- 전문연구/산업기능요원 국외파견/출장 업무절차
 - 병무청 고객지원과 국외여행허가 신청(053-607-6351)
 - 사회복지과 산업지원계 산업기능요원 국외파견/출장 담당자 검토
- 전문연구/산업기능요원 국외파견/출장기간(3개월 초과시)
 - 국외여행기간이 3개월을 넘는 기능요원은 국외제체기간 「국외체재 중 업무수행 상황부」(붙임 제11호 서식)를 매일 작성하여 주 단위로 현지책임관의 확인을 거쳐 2부마다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이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비치·관리하고 사본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* 「국외체재 중 업무수행 상황부」작성·관리가 부실한 경우 평가 시 감점
- * 2021년도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매뉴얼(33페이지참고)